

December 13, 2013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벌규정 면책 조항을 적극 입증하여 법인 불입건에 성공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는 종업원이 범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종업원 외에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면서도 그 영업주의 가담 정도나 감독여부에 따른 면책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헌재2009.7.30.자2008헌가18결정), 개정법(법률 제9875호, 2009. 1. 29.)은 제98조 단서에 영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영업주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 판단에 관하여,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구체적 모습, 이로 인하여 실제로 야기된 피해의 정도, 법인의 영업규모 및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위반여부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벌규정의 면책요건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적극 입증

본 사안에서는 조달청이 주관하는 공사입찰에서 최저가 심사프로그램의 관리용역회사 직원과 건설사 직원이 공모하여 전자입찰파일(BID)을 불법 교체하는 방법으로 조달청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범위반행위자들의 입찰방해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용자인 건설사에 대하여서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실제 행위자인 직원의 입찰방해행위가 건설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경우, 건설사로서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은 물론 행정청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건설사로서는 수사기관단계에서 미리 양벌규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 초기 단계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해당 건설사가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평소 전직원 및 해당 직원을 상대로 준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는 관련 자료 일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조기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이 양벌규정과 그 면책요건을 규정한 취지,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적용 배제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의 경우에

도 사용자인 건설사가 해당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본건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단서의 면책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입건하였습니다.

건설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주요 법률상의 법인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하고, 관련자료를 비치하는 등 평소에 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동성 변호사	TEL. +82 2 316 4023	E-Mail. dsmyung@shinkim.com
● 이용성 변호사	TEL. +82 2 316 4028	E-Mail. ysulee@shinkim.com
● 조수형 변호사	TEL. +82 2 316 4085	E-Mail. shcho@shinkim.com